

한국지하수·지열협회 정관

제정 2005. 11. 29.
개정 2007. 12. 14.
개정 2010. 02. 02.
개정 2015. 05. 12.
개정 2016. 05. 10.
개정 2018. 12. 04.
개정 2019. 01. 18.
개정 2019. 04. 08.
개정 2020. 03. 18.
개정 2022. 05. 17.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협회는 지하수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한국지하수·지열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 Groundwater and Geothermal energy Association(약칭 “KOGGA” 라 한다)라 칭한다. <개정 2019.04.08.>

제2조(목적) 협회는 지하수업자의 품위유지와 상호협력강화로 권익을 증진하고, 관련제도 개선과 지하수·지열 등 지하수 활용 관련기술의 향상 및 보급을 위한 제반사업을 육성·발전시킴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과 진흥 등을 도모하고 지하수보전·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4.08.>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협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01.18.>

제4조(공고방법) ① 협회의 공고는 협회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정관 및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7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04.08.>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 ①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04.>

② 정회원 및 준회원은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지하수정화업 등록을 하고 회원가입 절차를 마친 개인업체 또는 법인업체로 하며, 정회원 및 준회원의 구분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04.>

③ 특별회원은 지하수·지열 등 지하수 활용관련 업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회, 조합, 학계 등으로 한다. <개정 2018.12.04., 2019.04.08.>

제6조(가입 및 탈퇴) ①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이사회의 입회승인을 받는다.

② 특별회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입회승인을 받은 후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04.0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지 못한다.

1. 협회로부터 회원제명처분의 징계를 받은 후 그 처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체 또는 그 대표자가 임원으로 등재된 사업체

2. 회비를 체납한 상태에서 자격상실, 탈퇴, 폐업 등의 사유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과거 회원업체의 대표자가 임원으로 등재된 업체로서 그 회원자격 상실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9.04.08.>

④ 회원이 협회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탈퇴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제1호의 권리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권리를 가질 수 없다.
<개정 2019.04.08.>

1. 협회의 모든 권익을 균점할 권리

2.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개정 2019.04.08.>

3.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표결하는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회원의 권리 및 제8조에 따른 회원의 의무는 법인 또는 개인업체의 대표자 또는 본인(특별회원인 경우)이 행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표자가 복수인 법인회원의 대표권 행사는 협회에 등록된 대표자 1인만이 할 수 있다. <신설 2019.04.08.>

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관 및 제 규정에 의해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피임될 수 없다. 다만, 전문기술 또는 정책자문의 필요에 의해 제4호의 위원회 구성이 필요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19.04.08.>

1. 협회의 임원

2. 대의원

3. 지회 및 지부의 장

4. 각종 위원회 위원

5. 기타 이 정관 및 제 규정에 의하여 피임되는 자의 모든 직책

④ 제3항 각 호의 지위에 있는 자가 재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다. 다만, 제7조의2에 의해 회원의 권리행사가 제한되었을 때는 그 기간 중 당해 직위의 직무를 정지한다. <신설 2019.04.08.>

1. 지하수법 제23조, 제28조, 제29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 정지 처분을 받거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에 따라 회생 절차개시 신청 또는 파산을 신청하였을 때

4. 제9조(기존회원이 합병 후 존속법인이면서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5. 피임 당시 소속된 회원업체의 대표직을 사임하였거나 상실하였을 때
6. 피선거권이 없는 자가 해당 직위에 선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7. 대의원, 지회 및 지부 등 특정직위를 전제로 하는 직위의 경우 그 전제로 한 직위를 상실하였을 때

제7조의2(회원의 권리행사 제한)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1. 정관에 따라 회원자격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2. 제48조에 의한 회비를 회비규정이 정하는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전문신설 2019.04.08.]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회비의 납부 의무
2. 협회 구성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3. 협회의 정관과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의 준수 의무
4. 협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 및 보고 의무
5. 지하수법 및 이에 따르는 지하수 환경개선(불용공 방지 등) 운동의 준수 의무 <개정 2019.04.08.>

제9조(권리·의무의 승계) 회원이 상속, 양도 또는 법인의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후 법인이 회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기존회원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 후 그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제3항 각 호의 직위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4.08.>

제10조(회원의 자격상실)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회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며, 제7조에 따른 협회에 대한 모든 권리도 상실한다. <개정 2019.04.08.>

1. 지하수법에 의하여 사업부문 등록이 취소 되었을 때
2. 이 정관에 의하여 협회에서 제명된 때 <개정 2019.04.08.>

3. 지하수업을 폐업하거나 회원탈퇴서를 제출 하였을 때
4. 2년 이상 계속해서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9.04.08.>
- ② 제1항제4호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 자가 재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미납회비 전부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9.04.08.>

제11조(신고) 회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2주일 이내에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주소, 면허 등 회원정보를 변경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폐지하였을 때
3.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그 밖에 협회가 필요하여 별도 규정으로 신고를 요구한 사항 <개정 2019.04.08.>

제 3 장 사 업

제12조(일반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하수·지열 등 지하수 활용 관련 기술의 개발과 보급 <개정 2019.04.08.>
2. 지하수·지열 등 지하수 활용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조사·연구와 개선 건의 <개정 2019.04.08.>
3. 지하수법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하수·지열 등 지하수 활용 관련 조사, 연구, 용역, 시공 등의 대행·위탁사업의 수행 <개정 2019.04.08.>
4. 지하수·지열 등 지하수 활용 관련 국내·외 정보 및 자료의 수집과 제공 <개정 2019.04.08.>
5. 지하수·지열 등 지하수 활용 관련 업계의 공정거래제도 확립과 분쟁의 조정 <개정 2019.04.08.>
6. 지하수·지열 등 지하수 활용 관련 세미나 및 우수기자재 추천과 전시회 등의 개최 <개정 2019.04.08.>
7. 지하수를 이용하는 지열냉난방시설의 조사 및 관련사업

8. 국내·외 관련 업계 및 유관 학술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9. 지하수·지열 등 지하수 활용에 관한 조사 및 연구와 이에 필요한 부설기관(시설)의 설치 <개정 2019.04.08.>
10. 기타 회원의 복지증진과 지하수·지열 등 지하수 활용 관련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9.04.08.>

제13조(특별사업) 협회는 지하수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하수법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이행보증금 보증서 발급 <개정 2018.12.04.>
2. 지하수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한 교육훈련 <개정 2018.12.04.>
3. 지하수·지열 등 지하수 활용 관련 학술 및 자료집, 회지 등 발간 <개정 2019.04.08.>
4. 전문기술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5. 지하수·지열 등 지하수 활용 관련 기술인력의 경력관리 <개정 2019.04.08.>
6.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현장업무 지원
7. 지하수·지열 등 지하수 활용 관련 업계의 안정적 해외진출 방안 연구 및 지원 <개정 2019.04.08.>
8. 지하수 및 지하수를 이용하는 지열냉난방시설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한 지원 및 홍보사업
9.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민간시설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하수환경교육
10. 지하수·지열 등 지하수 활용 관련 업체의 경영상태 및 기성실적 관리 <개정 2019.04.08.>
11. 사후관리이행확인서 발급
12. 지하수시설·수질개선 관련 기술개발 및 홍보, 시행사업 <개정 2019.04.08.>
13. 지하수·지열 등 지하수 활용 관련 분야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 <신설 2018.12.04.> <개정 2019.04.08.>

제 4 장 임 원

제14조(임원의 정수) ① 협회의 임원으로 회장 1인, 부회장 3인(수석부회장 포함) 이내, 이사 16인(회장, 부회장 포함) 이내, 감사 2인 이내를 둔다. 그리고 상임이사는 별도로 1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04.>

② 협회의 임원중 회장,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고, 상임이사는 상근으로 한다.

제15조(회장 및 부회장) ① 회장은 선출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정회원인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협회를 대표하며, 협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정관 및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회의에서 의장이 된다. <개정 2018.12.04.>

② 부회장(수석부회장 포함)은 이사 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가 선출하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리하며,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리할 수 없는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8.12.04.>

제16조(상임이사, 이사, 감사의 선임) ① 상임이사를 둘 경우 회원이 아닌 자 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가 선출하여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8.12.04.>

② 당연직 이사인 회장을 제외한 이사의 3분의2는 선출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정회원인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3분의1은 선출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정회원인 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출하며,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협회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다만, 회장과 이사를 동시에 선출하는 경우 회장이 추천하는 3분의1 이사는 당해 당선자(신임회장)가 추천한다. <개정 2018.12.04.>

③ 감사는 선출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정회원인 자 중에서 총회가 선출하며, 이사와 감사는 상호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8.12.04.>

제17조(임원선임의 제한 및 당연퇴직 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지하수법 제23조, 제28조, 제29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저촉되는 자 <개정

2019.04.08.>

2. 정관 및 제 규정에 의해 피선거권이 없는 자 <개정 2019.04.08.>

3.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 정지 처분을 받거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에 따라 회생 절차개시 신청 또는 파산을 신청하였을 때 <신설 2019.04.08.>

4.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5를 초과하였을 때 <신설 2022. 05. 17.>

5. 감사가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해당할 때<신설 2022. 05. 17.>

② 제7조제4항 및 제10조에 따라 직위 또는 회원자격이 상실되는 임원은 당연히 퇴직되며, 제7조의2에 의해 회원의 권리행사가 제한되었을 때는 그 기간 중 당해 직위의 직무를 정지한다. <개정 2019.04.08.>

③ 제2항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4.08.>

[제목개정 2022. 05. 17.]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회장을 포함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04.>

②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하고, 임원의 증원으로 인하여 임기 중에 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선출당시 다른 임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보선된 회장의 경우 전임자의 잔임기간이 2분의1 이상인 때에만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8.12.04.>

③ 임원전원이 임기만료 전에 사임하였을 때에는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임기로 한다. 다만, 임기종료일은 당해 임기만료년도의 정기총회에서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12.04.>

④ 임원의 임기개시는 3월1일로 한다. 다만,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선출된 임원의 임기개시는 선출일로 한다. <개정 2018.12.04.>

제19조(명예회장 및 고문, 자문위원) ① 협회에 명예회장 1인과 고문,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04.08.>

② 명예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전회장으로 하며, 고문 및 자문위원은 협회 및 업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선임당시 회장의 임기로 한다. 다만, 직전회장이 없거나 연임한 경우에는 전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04.08.>

③ 명예회장 및 고문, 자문위원의 추대나 위촉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04.08.>

④ 명예회장과 고문, 자문위원은 회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신설 2019.04.08.>

[제목개정 2019.04.08.]

제20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협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 회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총회에 보고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개정 2018.12.04.>

② 감사는 협회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04.>

③ 삭제 <2018.12.04.>

제21조(임원 및 명예회장·고문·자문위원의 보수) ① 협회의 임원 및 명예회장·고문·자문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4.08.>

②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상근하는 유급 임원 및 위원을 들 수 있고, 보수는 별도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목개정 2019.04.08.]

제 5 장 총회와 이사회

제22조(총회와 대의원)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은 선출직과 당연직으로 구분하고, 선출직 대의원은 선출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정회원인 자 중에서 선출하며, 회장·부회장과 임원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개정 2018.12.04., 2019.04.08.>

④ 대의원의 수는 50명 이상 100명 미만으로 한다.

⑤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시·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 정회원 수에 비례하여 선출한다. 다만, 대의원이 임기 중에 연속하여 2회 이상 총회에 불참하는 경우 연임할 수 없다. <개정 2018.12.04.>

⑦ 대의원의 선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개최한다.

제24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대의원이 재적대의원 3분의1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한 때 <개정 2018.12.04.>

3. 제20조제2항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신설 2019.01.18.>

② 제1항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 받았을 때에는 회장은 청구가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04.>

③ 제1항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대의원의 대표 또는 소집을 요구한 감사가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8.12.04., 2019.01.18.>

④ 삭제 <2018.12.04.>

제25조(총회의 소집절차) 총회의 소집은 회의일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사항과 회의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매사업년도의 수지예산과 사업계획의 승인 <개정 2018.12.04.>
3. 결산의 승인
4. 협회의 해산·합병 또는 분할
5. 임원의 선출과 해임
6. 준비금 및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7.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개정 2019.01.18.>
8. 차입금 한도액
9. 이사회에 결의로 제안하는 사항
10.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이나 정관 또는 제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을 의결하거나, 협회의 해산·합병·분할 또는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는 경우 총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2.04., 2022. 05. 17.>

② 제26조제5호의 임원의 선출의 경우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득표자에 대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신설 2018.12.04.>

③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본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회에서 선임된 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04.>

④ 총회에서는 제25조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회에서 긴급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2.04.>

제28조(총회의 회기연기) ① 총회의 회기는 전체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이를 연기할 수 있다. 동의의 방법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에 의한다. <개정 2019.04.08.>

② 제1항에 의하여 속개된 총회에서는 제25조의 소집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4.08.>

제29조(의결권과 선거권 및 대리인의 자격) ① 대의원은 각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개정 2018.12.04.>

② 삭제 <2018.12.04.>

③ 대의원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사항 중 제1호, 제4호 내지 제5호에 관하여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18.12.04.>

④ 제3항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본 협회의 타 대의원 또는 해당 대의원이 대표자로 있는 회원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복대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04., 2019.04.08.>

⑤ 삭제 <2018.12.04.>

⑥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사항을 표시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 개최 전에 미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8.12.04.>

⑦ 회장은 제7조제4항, 제7조의2, 제10조에 따라 직위 및 자격상실, 권리행사 제한 대상자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총회 전 대의원에게 필요한 확인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총회에 의결권 및 선거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9.04.08.>

제30조(이익상반의 경우) 총회에서 협회와 회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경우에는 당해 회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1조(의사록작성)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01.18.>

제32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협회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회는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및 일시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구성원 과반수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⑥ 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9.01.18.>

1. 이사가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집을 요구한 때 <신설 2019.01.18.>

2. 제20조제2항과 관련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신설 2018.01.18.>

⑦ 회장은 제6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소집할 자가 없거나 소집을 요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4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01.18.>

제33조(이사회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2. 기채와 그 상황

3. 총회 승인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의 변경,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04.>

4. 총회에 부의할 사항 <개정 2018.12.04.>

5. 총회의 위임사항과 협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04.>

6. 규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개정 2018.12.04.>

7. 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04.>

8. 회원의 포상 및 징계 <개정 2018.12.04.>

9.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정 <개정 2018.12.04.>

10.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12.04.>

② 총회의 의결사항 중 이사회에 위임한 사항은 위임의 범위 내에서 의결하여야 하며, 총회의결사항을 반복할 수 없다.

③ 삭제 <2018.12.04.>

제34조(이사회 의결) 이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의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9.04.08.>

제35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의장이 지명하고 이사회가 승인한 출석이사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08.>

제 6 장 지회, 위원회 및 사무국, 부설기구

제36조(지회 및 지부) ① 협회는 회원의 지역별 참여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지회 및 지부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04., 2019.04.08.>

② 지회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지부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12.04.>

③ 지회 및 지부의 선정과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지회장은 대의원 중에서 해당 지회 내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하고, 지부장은 정회원 중 해당 지부 내에서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개정 2018.12.04., 2019.04.08.>

제37조(각종위원회) ① 협회는 업무집행 및 특정분야의 연구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목적의 달성에 따라 이를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19.04.08.>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의2(선거관리위원회) ① 협회는 선거업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회장 선거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신설 2018.12.04.]

제38조(사무국) ① 협회는 사무국을 두고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이하 약간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직제 및 직원의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부설기구) ① 협회의 효율적 운영과 지하수·지열 등 지하수 활용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부설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04.08.>

② 부설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한국지하수·지열시험센터) ① 협회는 지하수 및 지열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지하수·지열시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지하수 및 지열과 관련된 교육, 홍보, 정보 수집 및 연구

2. 지하수·지열시험계획의 수립과 집행

3. 지하수·지열시험결과의 관리

4. 지하수·지열시험을 위한 국내외 교류와 협력

5. 지하수·지열시험 기준의 수립과 그 시행

6. 그 밖에 지하수·지열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활동

② 한국지하수·지열시험센터는 협회 부설로 한다.

③ 한국지하수·지열시험센터는 센터장 1명과 기술자를 포함한 10명 이내의 직원으로 구성하고, 센터장 및 직원의 임기와 선출 방법 등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④ 한국지하수·지열시험센터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별도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1조(정관 기타 서류비치) ① 회장은 정관, 규정과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회원명부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08.>

② 협회의 회원은 언제든지 회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04.08.>

③ 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42조(결산관계서류비치) ① 회장은 정기총회 회의일의 7일전에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제1항의 서류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협회의 임원과 대의원은 언제든지 회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서류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04.08.>

④ 회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43조(회계장부등의 열람) ① 회원은 총 회원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지 회장에게 회계장부와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04.08.>

② 회장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 7 장 자산 및 회계

제44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목개정 2019.04.08.]

제45조(자산) ① 협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그 목록은 별지 1 과 같다. <개정 2019.01.18.>

1. 재산목록에 기재한 재산
2. 회원의 회비
3. 사업에 따른 수입금
4.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금
5. 기타 수입금

② 협회는 설립목적 및 공공·공익사업 투자를 위한 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도 결산잉여금의 100분의10 이상을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총회의 의결을 통해 세계잉여금을 차기 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이월할 수 있다. <개정 2018.12.04.>

③ 자산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 등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54조에 의한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12.04., 2019.01.18.>

제46조(재정) 협회의 재정은 제45조제1항의 1호 내지 5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47조(회계) ① 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목적을 지정하여 수탁한 재산이나 기탁금은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지출할 수 있다.

제48조(회비) ① 협회의 회비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1. 일반회비라 함은 협회운영에 필요한 경상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입회비, 기본회비, 통상회비를 말한다.

2. 특별회비라 함은 협회가 예기하지 못한 사업이나 행사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일반회비 이외의 회비를 말한다.

② 입회비는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부과하고, 기본회비는 연1회 회원에게 부과하며,

통상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회비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9조(수수료) 협회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증명서의 발급과 업무지원 등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0조(예산) ① 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8.12.04.>

③ 협회의 운영비용은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하고, 총회 승인 범위내에서 이를 변경하거나 예비비를 지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얻어 변경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을 변경하거나 예비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04.>

④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필요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신설 2018.12.04.>

제51조(결산) ①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세입·세출결산서(대차대조표, 잉여금 또는 손실금 처분계획서, 예산과목 전용내역, 예비비 사용 내역, 재산목록, 기타 부속명세서 첨부) <개정 2018.12.04.>

② 감사는 결산서의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장 포상과 징계

제52조(포상) ① 회장은 지하수·지열 등 지하수 활용 관련 업계의 발전에 현격한 공로가 있거나 또는 협회에 기여한 인사에게 해당 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 승인을 받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04.08.>

②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53조(징계)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 등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로서 징계처분 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징계에 한해서 회장이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9.04.08.>

1. 국가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1년 이상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거나 협회의 정관 또는 제 규정 및 총회·이사회의 결정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9.04.08., 2022. 05. 17.>
2. 업계나 조직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회원의 품위를 손상케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협회에 손실을 끼치거나 협회의 명예를 훼손케 한 경우
4. 회원으로서의 제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의 이행을 심히 태만히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회비를 체납한 경우 <신설 2019.04.08.>

② 제1항에 의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회원 제명처분
2. 회원자격 정지처분
3. 경고
4. 대의원, 지회장, 지부장 등 특정직위의 자격상실 <신설 2022. 05. 17.>

③ 회원이 제2항제2호의 자격 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19.04.08.>

④ 기타 징계의 내용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04.08.>

제 9 장 보 칙

제54조(정관의 변경)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정관의 변경을 총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1. 이사회 의결로서 요구할 때.

2.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구할 때.

② 정관의 변경은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04.08.>

제55조(해산) ① 협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총회의 의결

2. 협회의 파산

3. 주무관청의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개정 2018.12.04.>

4. 기타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제1호의 해산에 대한 의결은 제27조제1항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재적 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9.04.08.>

③ 협회가 제1항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04., 2019.04.08.>

제56조(청산인) 협회가 해산할 때에는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대의원 중에서 이를 선임할 수 있다.

제57조(청산인의 직무)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8조(청산재산의 처리) 협회가 해산한 경우에는 협회의 채무를 결제하고도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제59조(제 규정) ① 이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이 정관이 위임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04.08.>

② 회장은 이 정관 및 제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04.08.>

[제목개정 2019.04.08.]

제60조(준용)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05. 11. 29)

- ① 이 정관은 건설교통부의 허가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14)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건설교통부의 변경허가일부터 시행한다.
- ② (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임원의 임기는 개정정관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임원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 칙(2010. 02. 02)

- ① 이 정관은 국토해양부의 변경허가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05. 12)

- ①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의 변경허가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05. 10)

- ①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의 변경허가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2. 04)

- ①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임원의 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에도 불구하고 수석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정수 등 제14조제1항의 임원의 정수는 2019년 2월 정기총회부터 적용한다.
- ③ (임원 등 협회 피선거권자 선출, 자격 등에 대한 경과조치) 임원 등 협회 피선거권자 선출 및 자격 등 제15조, 제16조 제22조제3항, 제36조제1항의 개정 사항은 이 정관 시행 후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④ (회장 중임제한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 현재 1회 이상의 임기가 종료되었거나 2회 임기가 진행중인 회장의 경우 정관 제18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1회의 임기만을 적용한다.

⑤ (결산잉여금 적립에 대한 경과 조치) 제45조제2항 개정 사항에 따른 결산잉여금 적립은 2019년도 결산잉여금에 대해 2020년 1월부터 적립하고, 그 비율은 2020년 100분의5, 2022년 100분의7, 2023년 100분의10으로 단계적 상향 적용한다.

부 칙(2019. 01. 18)

①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04. 08)

①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항 및 제3항제2호의 개정사항은 이 정관 시행 후 새로 회원으로 가입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 (회원의 권리행사 및 임원자격의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7조의2, 제17조제1항제3호의 개정사항은 헌법 제13조의 법률불소급원칙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권리의무에 대한 행사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행정소모 또는 소송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정관의 시행과 함께 적용한다.

부 칙(2020. 03. 18)

①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05. 17)

① 이 정관은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1] 재산목록 <신설 2019.01.18.> <개정 2019.04.08., 2020.03.18., 2022. 05. 17.>

재 산 목 록					
총 계	천원				
기본 재산	구 분	소재지	면적 m ²	평가액	출연자
	건 물				
	토 지				
	출연금				
	예 금			천원	발전적립금
	소 계			천원	
운영 재산	품 목	종 류	수 량	금 액 현재가액	출연자
	장기금융상품	장기성예금		천원	
	투자부동산	소노펠리체 회원권 골드		천원	
	기계장치	수위측정장비		천원	
	비품	가구 컴퓨터 냉난방기 등		천원	
	소프트웨어			천원	
	임차보증금	사무실		천원	
	기타보증금	시설관리보증금 렌트카보증금		천원	
	회원권	쑈비치관광호텔 회원권 실버		천원	
	여 백				
소 계			천원		